

감정평가의뢰서

동인감정평가법인(주) 앞

착수금 :

- (원)

감정평가목적	☐ 시가참고 ☐ 세무(상속/증여) ☐ 처분/매수 ☐ 자산재평가 ☐ 보험 ☐ 기증 ☐ 컨설팅 ☐ 기타 :
평가의뢰물건	☐ 토지 ☐ 토지·건물 ☐ 아파트/상가 ☐ 공장 ☐ 영업권/특허권 ☐ 기타 :
평가의뢰물건 소재지(보관장소)	
소유권자	☐ 신청인과 동일 ☐ 소유권자 :

후면 기재의 약정사항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.

2026 년 월 일 서명 (인)

의뢰인	구 분	☐ 개인 ☐ 법인 :	성 명	
	전 화		이메일	
	주 소			

세 무 용 기 재 사 항

☐ 전자세금계산서	① 사업자등록번호	(사업자 등록증 1부)
	② 세금계산서용 이메일	
☐ 현금영수증	(카드 번호/ 휴대폰 번호)	
입 금 계 좌	1005-903-131498 우리은행 동인감정평가법인(주) 착수금 입금시 진행되며, 입금전 유선 확인 부탁드립니다.	

발송 관련	감정평가서 교부방법	☒ 등기우편 ☐ 퀵차불 ☐ 기타 :
	감정평가서 수령주소	(의뢰인 주소와 상동)
교부요구일 및 기타		



동인감정평가법인(주)
DONGIN APPRAISAL Co.,Ltd.

┃ 본사 ┃ 043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6, 5층
┃ TEL ┃ (02) 6261 - 0863 ┃ FAX ┃ (02) 6261- 0864
┃ E-Mail ┃ dongin1@kapaland.co.kr

약정사항

1. 감정평가 의뢰인은 당 법인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감정평가보수를 납입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2. 감정평가 의뢰물건(권리) 중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·사변이나 당 법인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감정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건(권리)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3. 감정평가 의뢰인은 의뢰물건의 추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을 착수금(최저액 200,000원)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추정 출장여비 또는 특별용역비를 위 착수금에 추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.

가. 출장여비가 착수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나. 특별용역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4. 감정평가보수는 당 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 완료를 통지받은 후에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합니다.
5.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보수의 완납 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6.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감정평가 의뢰시 납입한 착수금은 환급합니다. 다만, 감정평가 불능 사유가 감정평가 의뢰인(담보평가의 경우 확인 금융기관 포함)에 속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착수금 환급은 제7호에 준합니다.
7. 감정평가 의뢰 후 당 법인의 현장조사 전에 의뢰인이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제1호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은 당 법인에 귀속하며, 현장조사 후에는 착수금은 일체 환급하지 아니합니다. 또한 감정평가서 작성 후에는 소정의 감정평가보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8. 법령의 규정이나 당 법인의 특약에 따라 착수금 없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제6호 단서 또는 제7호의 사유로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반려하는 경우에는 동호에 따른 보수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9. 감정평가서는 의뢰시의 용도(감정평가 목적 및 제출처)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, 당 법인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.
10. 당 법인의 승낙없이 감정평가서를 복사 또는 활용하거나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사본을 의뢰시의 용도(감정평가 목적 및 제출처) 이외에 사용함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당 법인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.